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민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54
----------	------

발의연월일 : 2019. 10. 15.

발 의 자 : 양민규 의원(1명)

찬 성 자 : 김호평, 송재혁, 여 명,  
임종국, 이광호, 김경영,  
채유미, 김경우, 최 선,  
장인홍, 황인구, 전병주,  
권순선, 김수규 의원(14명)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무 및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8조).

다.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구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성과분석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민간위원은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지)** ①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4.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한다.

제10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14,6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text{연간위원회설치·운영비용})_i = 14,600\text{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연간 민간위원 여비  
= 2,100천원 + 540천원 + 280천원  
= 2,92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구성원 수 ×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7명 × 150,000원 × 2회  
= 2,100천원

※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른 기본료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

※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 2명을 제외한 7명 지급 전제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9명 × 30,000원 × 2회  
= 540천원

※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

· 연간 민간위원 여비 = 전체 민간위원 수 × 1인당 국내여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7명 × 20,000원 × 2회  
= 280천원

※ 1인당 국내여비 단가는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2만원으로 가정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담당관  
사업평가팀장  
분석관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이정수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